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12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오세희 · 박선원 · 장철민
허성무 · 이수진 · 송옥주
전진숙 · 전은수 · 임문영
송재봉 · 권향엽 · 박희승
서영교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 자율무인체계 · 사이버 · 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 · 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에서 실증 · 조달 · 수출에 이르는 전(全)주기에서 제도적 공백과 진입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新安보 전략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 · 중견기업을新安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 · 육성하며, 연구개발 · 실증 · 투자 · 조달 · 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新安보 분야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

여,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 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출연·출자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조화되도록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및 회수금 재투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전략적 투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신안보 전략분야,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 신안보전략투자전문 회사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등을 받거나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후보기업 중 신안보 전략분야의 매출·연구개발 투자, 보안체계, 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지정·보안 위반 등의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여 「상법」상 발행한도 특례를 두고, 투자 회수금의 전액 재투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혁신기업등에 모태조합 출자·보증·특별대출 등 금융지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우선지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출연금·현금부담비율·기술료 특례 등 기술혁신 지원·특례, 실증 지원 및 데이터 제공·활용 지원, 연구개발 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 및 개발기업의 민간사업 활용권, 전문인력 양성·연구인력 지원사업 우선지원, 우선구매·판로지원사업 우선지원, 체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기술실증 등 협력 촉진, 국방첨단전력사업에의 참여 촉진, 수출 및 국제협력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보안 수준의 향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합병절차 등 특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인정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비밀엄수, 적극행정 면책, 청문, 보고·검사, 권한의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비밀 누설 및 보고·검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사. 기존에 혁신·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자 및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新安보 전략분야 혁신기업의 발굴·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新安보 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新安보 전략분야”란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분야로서 제6조에 따른新安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2. “新安보 혁신기업(이하 “혁신기업”이라 한다)”이란新安보 전략분야 기술의 혁신성을 보유하고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新安보 후보기업(이하 “후보기업”이라 한다)”이란新安보 혁신기업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란 신안보 전략분야의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5. “체계기업”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를 개발·생산하는 방위산업체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신안보 혁신기업의 육성과 신안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안보 혁신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이하 “혁신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과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방산분야와 관계된 사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활용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기업등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2. 신안보 전략분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혁신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혁신기업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혁신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혁신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혁신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혁신 기반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육성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

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신안보 전략분야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혁신기업의 지정·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에 관한 사항
5.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신안보 전략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기업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방산분야와 관계된 사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관계 기업·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혁신기업등의 지정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혁신기업등의 지정 및 취소

제9조(후보기업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기업으로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후

보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평가·선정·인증 등을 하거나 지원한 기업

나. 제12조에 따른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후보기업의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혁신기업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후보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신안보 전략분야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 매출액에 대한 신안보 전략분야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보안시설, 보안인력 및 보안관리 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신안보 전략분야의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혁신기업의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안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설립 등

제12조(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의 설립) ① 신안보 전략분야의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그 성과의 재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전문회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전문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전문회사의 지위 및 출자) ① 전문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전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가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부 및 한국벤처투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정부 등의 출연 및 출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에 따라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의 총수는 「상법」 제344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출자금의 지급방법·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회사의 사업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유망 혁신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
2. 신안보 전략분야의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직접투자
3. 신안보 전략분야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4. 투자한 혁신기업등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
5. 신안보 전략분야 기업의 기술혁신 기반 조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전문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자금의 조성 및 회수금의 재투자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투자사업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조성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출자금
2. 제14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및 출자금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출자금
4. 사업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 및 투자 회수금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금·출자금·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자금의 투자 회수금은 배당 등의 방법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전문회사의 투자사업에 재투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회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자본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이용) ① 한국벤처투자는 전문회사가 혁신기업등의 발굴·투자 및 성장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전문회사에 제공하거나 전문회사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회사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제공의 절차 및 방법, 접근 권한 및 보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회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준용) 전문회사가 수행하는 투자에 관

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혁신기업등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20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혁신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혁신기업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혁신 지원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안보 혁신기술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다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혁신기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신안보 전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신안보 전략분야의 발전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신안보 전략분야 연구개발사업(이하 “신안보전략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안보전략연구개발사업(국방 연구개발사업 제외)에 참여하는 혁신기업등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신안보전략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실증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기업등이 개발한 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군부대, 공공시설 등의 실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증을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실증의 결과가 같은 법에 따른 실증 및 획득 절차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기업등의 신안보 전략분야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국방 관련 데이터,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등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를 국가안보 및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혁신기업등에 제공하거나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은 혁신기업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개발성과물의 귀속 등) ①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신안보전략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혁신기업등(이하 “개발기업”이라 한다)과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개발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기업의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개발성과물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식재산권의 귀속·활용 및 그 제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혁신기업등이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대 추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혁신기업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관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새로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조달 시 혁신기업등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혁신기업등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기업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체계기업과의 협력 촉진) 정부는 체계기업과 혁신기업등 간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실증 및 생산·사업화 협력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방첨단전력사업에의 참여 촉진) ① 정부는 혁신기업등이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방첨단전력사업(이하 “국방첨단전력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는 경우 혁신기업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경쟁적 기술대화를 실시하는 경우 혁신기업등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혁신기업등이 개발한 제품·서비스가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록 인증심사의 준비,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첨단전력사업의 추진 방법 및 수행 절차에 관하여는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해외시장 진출 촉진) 정부는 혁신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외교·통상·국방 분야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전시회·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인증 획득 등 수출규제대응 지원
3. 통역·번역 및 수출 관련 컨설팅 지원
4.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혁신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1조(보안 강화) 정부는 혁신기업등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보안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안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지원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의 지원
3. 국내외 보안 관련 인증의 취득 지원
4. 그 밖에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보안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지원

제32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혁신기업등의 주식교환, 합병 절차의 간소화,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혁신기업등”으로 본다.

제3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혁신기업등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34조(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또는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심의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2. 전담기관 및 전문회사의 임직원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35조(적극행정 면책 등) ①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는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전문회사의 임직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혁신기업등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기업등의 지정취소

제37조(보고·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기업등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현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 또는 전문회사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담기관 및 전문회사의 임직원
3. 제3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또는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3조제4항 및 제29조: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제2조(중전 선정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혁신기업등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따른 혁신기업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는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회사
로 본다.